

통계교육원 혜음관 주간경비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통계교육원 혜음관 주간경비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. 5. 9.
통계교육원장

1.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

□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지역	채용구분	근무장소	인원	근무기간	급여	근무조건(시간)
대전	기간제근로자 (주간경비원)	통계센터 혜음관*	1명	2024.6.3. ~ 2024.11.29. (약 6개월)	○ 일 수당: 83,360원 ○ 정액급식비 별도 ○ 초과근무수당 별도 및 4대 보험 가입	○ 근무시간 - 평일 9:00 ~ 18:00

* 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

□ 담당업무

채용구분	담당업무
기간제근로자	- 통계교육원 혜음관 시설 안내, 숙박자 관리 - 통계교육원 혜음관 전기 및 보일러 등 시설관리 보조업무 - 기타 혜음관 운영을 위한 관련 업무 등

2. 채용 방법

□ 1차 서류전형

-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(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 반영 불가)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 면접심사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-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지식,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 합격자 선정 기준

- 2차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예비 합격자 선정
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(추가)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3. 응시자격 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통계교육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4. 전형일정(예정)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4. 5. 20.(월), 개별통보
- 면접일시: 2024. 5. 22.(수) (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
- 면접장소: 통계센터 4층 6강의실 (예정)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5. 23.(목), 개별 통보

5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4. 5. 9.(목)~ 5. 16.(목) 18:00까지
- 접 수 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연 락 처
통계교육원 (교육기획과)	김종호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5층	☎ 042-366-6113 이메일: kjh6767@korea.kr

- 접수방법: 이메일, 방문, 우편 등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방문접수는 평일 9:00~18:00 내에 접수 가능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붙임1 참조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3 참조)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- ※ 필요 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
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최종합격 후 이중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

【붙임 1】

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

직종	기간제근로자	분야	경비원	응시번호	미기재
성명 (한글)			성별		
			생년월일		
연락처	전화번호				
	주소				
	e-mail				
일반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
	~				
	~				
	~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
	~				
	~				
	~				
자격사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
	전산 관련				
	기타				
	기타				
기타	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보육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지원대상(국가유공자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2024 년 월 일 성명 : (서명)					

- 주 1」 분야에는 [조사관리자, 업무보조원, 입력·내검요원 등] 기재
 2」 거짓으로 작성 시 **향후 2년간 채용 불가**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3」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붙임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, 국가유공자 증빙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, 자격증 등)

【붙임 3】

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

직종	기간제근로자	분야	경비원	응시번호	미기재
<p>○ 작성요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아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,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p>※ 유의사항: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(자기소개서 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삭제)</p> <p>(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)</p> <p>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통계청 경력 등), 지원업무에 대한 경력, 능력 등을 자유롭게 작성 <p>(지원동기 및 포부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작성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4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작성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인, 서명)</p>					

【붙임 4】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통계청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증명서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주민등록표 등·초본(다자녀 양육자)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취업지원대상자증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	-
--------	--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【붙임 5】

평 가 기 준

1. 전형별 점수 기준

1차 서류(필기)전형			2차 면접전형
자격증	기타점수	경력, 자기소개서 등	면 접
5	5	90	100

※ 전형별 점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,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관련 가점은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2. 1차 서류전형(100점)

○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

- 자격증 점수(5점)

자 격 증	점수
-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전기기사	5
-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 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※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- 기타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상위 계층 - 한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

- 경력,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(90점)

3. 2차 면접전형 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○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

항목	탁월(A)	우수(B)	보통(C)	미흡(D)	불량(E)
지식·창의력 (전문지식, 지침서)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설득·대화·발표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성실·의욕·책임	25~21	20~16	15~11	10~6	5~0
예의·품성	25~21	20~16	15~11	10~6	5~0

4. 최종 합격자 선정

- 2차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5. 예비(추가) 합격자 선정
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(추가)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국가유공자(취업지원 대상자) 등 가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제31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 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 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 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